

징 계 요 구 서

의 안 번 호	562
------------	-----

요구연월일: 2025. 8. 21.

요 구 자: 이순우, 임현호, 남완현
차인영, 이규선, 정선희
우경란, 박현우, 이성수
최인순, 최봉희 의원(11인)

1. 징계대상 의원: 유승용 의원

2. 징계 사유

- 2025년 7월 27일자 주요 언론에 「‘아는 동생 좀 도와달라’...아직도 만연한 지방의회 청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됨.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의회원이 1억대 수의계약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음. 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구민들에게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초래하여 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
- 이어, 2025년 8월 19일, 상기 청탁 의혹이 영등포구의회 부의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익명의

공익제보 형태로 접수되었음. 이는 단순한 외부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부정청탁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해당 행동은 부의장이 공적 직위에 부합하지 못하고 의회의 권위와 품격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임. 이는 부의장으로서의 품위와 책임감에 크게 어긋나는 언행으로, 의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

3. 적용 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서 명 부

(의안명 : 영등포구의회 유승룡 의원 징계 요구)

[illegible]